

9. 주택저당권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410호 1999. 6. 30..

개 정 이 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1999. 1. 29, 법률 제5692호)됨에 따라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가기준에 관한 사항 및 주택저당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함(령 제3조제2항).
-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산정의 기준 및 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령 제6조).
-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화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하도록 함(령 제7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금은 자본금·내부유보금 등 금융기관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채권유동화회사”라 한다)의 영업권·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제3조(자기자본비율 등) ①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을 연결대차대조표상의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8을 말

한다.

제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3. 채권유동화회사가 당해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5조(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권리행사) 법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유동화회사에 비치된 주택저당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가격) 채권유동화회사가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의 기준 및 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경영지도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과태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 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중 “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법 제11조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주택회보